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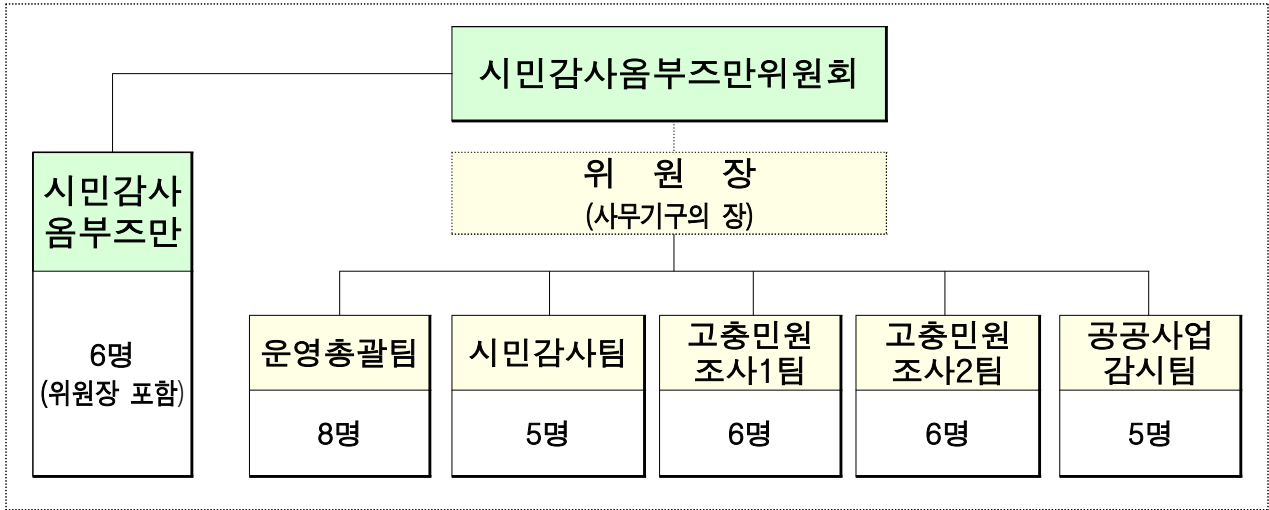
2023년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2023. 9.

I. 일반 현황

조 직 시민감사옴부즈만, 사무기구(5팀)



인 력 정원 32명 / 현원 31명

(’23.6.30. 기준)

구 분	총계	시민감사옴부즈만			사무기구					
		소계	위원장 (개방형 4급)	위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가급(주35시간)으로 정·현원 미포함)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32	1	1	(6)	31	6	17	7	1	-
현원	29	1	1	(5)	38	6	14	7	-	1
과부족	△3	-	-	(△1)	△3	-	△3	-	△1	1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 : 5명[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가급(주35시간)으로 정·현원 미포함]

주요임무

- 주민·시민감사 청구, 시의회 의뢰사항 등에 대한 감사
- 고충민원 처리 및 조정·중재, 청원 처리
-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등

II. 정책비전 및 목표

< 2023년도 정책방향 >

3기 위원회('22.5.~'25.5.) 본격 운영시기로서 **어려운 시민생활의 고충 해소, 경쟁력 있는 시정 구현 위한 업무의 창의적 개선, 시민을 위한 일 잘하는 조직으로 변화 필요**

불합리한 제도 개선 위한 시민·주민감사, **시정에 대한 불신·불만을 해소** 하는 고충민원 조사처리·청원처리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는** 공공사업 감시로 **시정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시민권익 증진 도모**

□ 추진체계

비전

시민권익 보호로 시민이 체감하는 동행매력 서울특별시 구현

추진방향

- 시민·주민감사 청구 및 직권감사 확대 통한 **신속한 행정개선**
- 고충민원·청원의 적극 처리로 **실질적 시민 권익보호 강화**
-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로 **시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시민을 위한 일 잘하는 위원회 운영으로 **시정 만족도 제고**

추진분야

시민·주민감사

고충민원·청원

공공사업 감시

위원회 운영

추진과제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 통한 시민·주민·직권감사 확대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만족도 및 수용성 제고

고충민원 적극 처리 및 처리 결과 수준 향상

민원배심제 운영 활성화로 고충민원 해결 강화

청원의 차질 없는 운영 통한 시민의 권익보장 확대

공공사업 공정성·투명성 제고 위한 중점감시 실시

감시 시각지대 방지 및 효율적 감시 위한 일반감시 추진

참관감시 활동 강화로 청렴계약 이행 확보

위원회 인지도 제고로 시민 참여 확대 및 위상강화

위원회 직무수행 역량 강화 및 외부 전문가 활용 확대

Ⅲ. 활동실적

1 주민·시민·직권감사 확대 통한 신속 행정 개선

- ◆ 주민감사 온라인 청구시스템 구축을 통한 감사청구 활성화
- ◆ 보도자료 배포 등 대시민 홍보 강화를 통한 감사청구 확대
- ◆ 감사·조사·감시활동 중 직권감사 사안 발굴 활성화

□ 주민·시민·직권감사 개요

구 분	주민감사	시민감사
근 거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조례 제15조	조례 제12조부터 제14조
청구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 주민 일정 수 이상의 연대서명 -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 (100~150명) 이상의 주민 연대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은 대표자 ○ 상시구성원수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목적사업 유관 분야)
청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및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기관 및 소속직원이 행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및 시 소속기관 - 시 지방공사, 시 출자·출연기관 - 시 사무위탁기관, 보조금 수령단체

※ 직권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조례 제24조(직권감사)에 따라 시민·주민감사, 고충민원 조사, 청원의 조사, 공공사업 감시활동 중 필요 시 감사 실시

□ 추진실적(6월말 기준)

○ 감사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연 도	접수	감사완료				진행중			각하 등	비고 (이월)
		소계	주민감사	시민감사	직권감사 등	소계	감사	청구절차		
2023. 6	8	3	-	2	1	1	1	-	4	-
2022. 6	11	5	2	2	1	3	1	2	3	
2022.12	15	8	2	4	2	-	-	-	6	1

- '23년 총 8건(주민3, 시민4, 직권 1)이 감사 청구되어 수리된 4건은 주민감사 1건, 시민감사 2건, 직권감사 1건이며, 이 중 시민·직권감사 3건은 완료하였으며, 주민감사 1건은 현재 감사 진행 중임
- 청구인 명부 미제출로 종료된 주민감사 2건, 감사청구 동일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조사 중, 법령 위반사항 없음 등의 사유로 '각하' 의결된 시민감사 2건 등 총 4건은 감사가 실시되지 못함

○ 감사결과 처분

- 행정상 조치는 7건으로 시정요구 2, 기관경고 1, 권고 1, 통보 3건이고, 신분상 조치는 훈계 1건임

(단위: 건/명)

합계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소계	시정요구	기관경고	기관주의	개선요구	권고	통보	의견표명	소계	징계	훈계 등	회수 등
8	7	2	1	-	-	1	3	-	1	-	1	-

○ 주민감사 온라인 청구시스템 운영

- '23년 상반기('23. 1.~6.) 시범운영 실시 ('23. 7. 1.부터 본격 운영)
- ※ 시스템 구축(행정안전부): '22. 1.~12.

□ 실태분석 및 평가

○ 감사청구 및 완료 건수는 전년도 대비 감소

- '23년 상반기 감사청구는 8건으로 전년 동기 11건 대비 3건(△27%) 감소하였고, 완료건수는 3건으로 전년 동기 5건 대비 2건(△40%) 감소하였는 바,
- 이는 주민감사 청구가 3건으로 전년 동기 5건 대비 2건(△40%) 감소, 직권감사 또한 1건으로 전년 동기 2건 대비 1건(△50%) 감소하였으며, 청구인 명부 미제출로 종료 2건, 감사청구와 동일내용 국가인권위

원회 진정 조사 중, 법령 위반사항 없음 등의 사유로 2건 각하되는 등 4건의 감사가 실시되지 못함에 따른 것임

- 그러나 2023년 7월부터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시스템이 운영됨에 따라 앞으로 주민감사 청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직권감사 사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민권익구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내·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의무화로 감사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

- 모든 감사에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 참여 의무화로 전문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감사청구인의 감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을 위해 감사 진행 과정에 최소 3회 이상 의견 청취 절차를 수행하고 있어, 감사 대상기관의 감사결과에 대한 수용율을 높여 행정전반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한 시정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상반기 참여실적: 감사완료 3건에 전문가 7명 참여

- 향후에도 모든 감사에 법률자문단을 비롯한 내·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해 감사의 전문성과 신뢰도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주요 감사 사례

① 자원회수시설 설치업무 정보공개 관련 시민감사

- 자원순환과는 자원회수시설 설치 업무 관련하여, 결재 완료되거나 외부 발송된 문서를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올리지 않는 등 정보공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감사 청구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를 근거로 시민공개일이 지정되어 있는 자원순환과-4903, 4910, 4954, 4960, 4962, 4963 문서와 비공개로 설정된 자원순환과-4916의 문서정보를 변경하여 정보목록(문서제목)이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등에 공개되도록 하고, 향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대로 처리토록 ‘시정요구’ 하고,
 - ➔ 정보공개청구 결정 부적정, 정보공개청구건 처리기한 미준수, 정보공개청구 결정 관련 결재방법 미준수 등 정보공개청구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해 ‘부서 경고’ 조치하고,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와 관련하여 시민공개일을 지정하는 경우,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권리침해가 없는지 신중히 검토토록 ‘권고’ 함

② DDP패션몰 뷰티허브 앵커시설 조성 등 관련 시민감사

- DDP패션몰 상가 3층 일부를 서울시가 뷰티허브 사업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4개월 이상 신규입점을 보류함에 따라 1~3층 상가의 공실은 계속 늘어나고, 일부 수의계약 건들도 서울시 뷰티허브 정책에 따라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추가되어 이와 관련 감사청구

주요 감사 사례

-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및 서울시 뷰티패션산업과장에게 상인협의회가 전자메일로 보내온 상인협회의 직인이 찍힌 문서 전자기록생산 시스템에 등록 및 직원교육 등을 실시토록 ‘시정요구’ 함
- ➡ TF 구성을 재검토하여 이전 대상 상인들과 의견 조율 및 협상의 역할을 담당할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전 반대 매장 상인·상인협의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여 3층 공실에 대한 신규입점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 함

3] 임대주택 민원업무 등 관련 직권감사

- 임대주택 민원처리 불성실 관련 고충민원 조사결과 서울시 주택정책과는 해당 민원을 반복민원으로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 반복민원 종결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 서울주택도시공사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는 해당 민원과 관련된 임대주택 입주예정세대 입주 전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시공 누락으로 인한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보수처리 지연 및 입주자 민원 발생, FMIS(공사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보수공사 지시·확인 등 업무처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실태 파악 및 개선점 도출 등을 위해 직권감사 실시
- ➡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임대주택 입주 전 시설물 보수공사 관련 업무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훈계)’ 조치 요구
-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앞으로 임대주택 입주 전 시설물 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 절차 없이 선 구두 작업지시 하거나 시설보수 공종이 시공과정에서 누락되어 하자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주택 시설물

주요 감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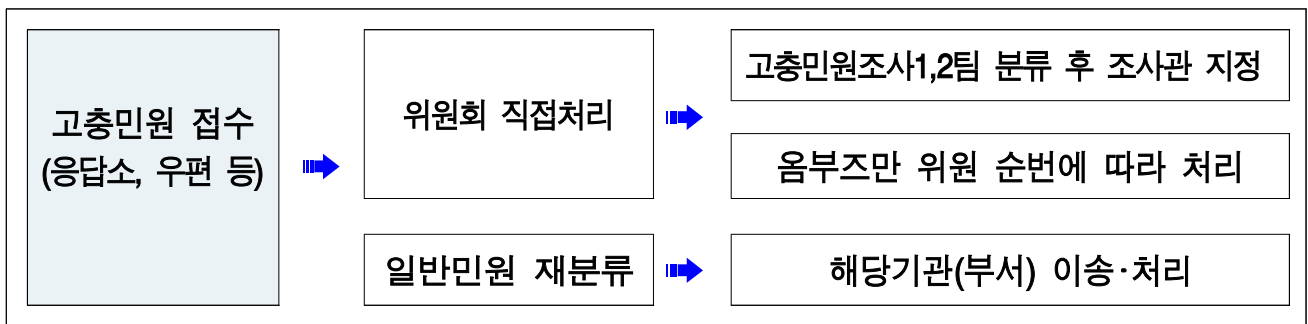
- 보수공사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통보’ 하고,
- ➔ 시 주택정책과장에게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 및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반복민원을 종결 처리 할 경우에는 1·2차 답변의 결재자 보다 차상급자(실·국·본부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 처리할 것을 ‘통보’ 함

2-1 고충민원 적극 처리로 실질적인 시민 권익보호 강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처리로 시민 권익 구제 및 보호 강화

□ 고충민원 처리개요

○ 고충민원 처리 흐름도



□ 추진실적 (6월말 기준)

○ 고충민원 접수·처리

- '23년 상반기 고충민원은 총 2,971건(일평균 22.5건) 접수되었으며, 직접처리 230건(7.7%), 재분류 등 이송·이첩 2,741건(92.3%)임
- 직접처리 민원 230건 중 직접조사, 확인회신 등 조사처리 건수는 209건이며, 21건은 내부종결 등 처리함

(단위: 건, %)

연 도	총계	처리유형			
		직접처리			이송·이첩 (재분류 등)
		소계	조사처리	내부종결 등	
2023.6.	2,971 (100)	230 (7.7)	209 (7.0)	21 (0.7)	2,741 (92.3)
2022.6	2,134 (100)	211 (9.9)	137 (6.4)	74 (3.5)	1,923 (91.1)
2022.12.	4,502 (100)	494 (11.0)	392 (8.7)	102 (2.3)	4,008 (89.0)

* 조사처리: 직접조사, 확인회신, 직권감사 전환 등

* 내부종결 등: 소송, 수사 중인 사안, 반복민원, 민원취하 등 민원처리 대상이 아닌 경우

○ 고충민원 조치결과

- 민원 230건을 조사 처리하여, 조치가 필요한 70건의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부서)에 권고 46개, 의견표명 36개 등 총 82개 조치 요구

연 도	조사처리 민원	조치요구 민원	조치요구 내역		
			계	시정·개선권고	의견표명
2023.6.	230건	70건	82개	46개	36개
2022.6.	137건	23건	57개	47개	10개
2022.12.	392건	86건	110개	86개	24개

○ 민원배심제 운영

- '23년 상반기 민원배심제 접수 및 처리 안건은 2건으로 전년 동기 1건 대비 1건(100%) 증가하였음
- 배심결정 결과는 권고 1건, 의견표명 5건임

연 도	접수(발굴) 안건	처리 안건 (개최 횟수)	개최 결과			결정 이행 현황		
			권고	의견표명	기각	이행	추진중	미이행
2023.6.	2	2(2)	1	5	-	1	5	-
2022.12.	2	2(2)	1	1	-	-	2	-

□ 실태분석 및 평가

○ 위원회 민원접수 및 조사처리 건수 증가

- 2023년 위원회에 배분(접수)된 민원은 2,971건이며, 이는 전년 동기 2,134건에 비해 증가(39%↑)
- 조사처리 건수는 209건으로 전년도 137건에 비해 증가(52.5%↑)
- 시민들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고충민원을 처리하여 월별 개인 목표(4건) 건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처리하였음

○ 권고·의견표명 등 조치요구를 통해 시민권익 구제와 행정개선 노력

- 관계기관(부서)에 조치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 70건 82개(권고 46, 의견표명 36) 조치요구 하였으며, 전년 동기 28건 57개(권고 47, 의견표명 10)에 비해 증가(44%↑)

주요 민원처리 사례

①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이행 촉구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방서가 퇴직 소방공무원인 민원인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일부 미비 및 예산상의 사유 등을 이유로 소방서에서 수당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 관하여 조사 요청
- ➔ 민원인이 이미 2012년도에 1차분 증빙자료를 적법하게 제출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현재 소방서가 자료 제출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편의주의로서 판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조치이며, 2차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는 민원인 1명에 불과(서울시 전체는 약 40명)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예산상 과다지출이 우려된다는 소방서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2차분 초과근무수당 11,237,780원을 민원인에게 즉시 지급할 것을 ‘권고’ 함

② 모자보건사업 신청 거부당한 임신부에게 의료비 지원하도록 권고

-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사업 지원신청 시 진단서 사본 제출이 가능하다고 공지하였음에도 민원인이 제출한 진단서가 ‘원본대조필’ 사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을 거부한 사안에 관하여 조사요청
- ➔ 비록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원래의 신청요건을 적용한 조치라 할지라도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요건을 임의 변경하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민원인의 신청을 접수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향후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련 공지사항을 즉시 수정하도록 ‘권고’ 함

주요 민원처리 사례

③ 따릉이 주차로 인한 시각장애인 통행불편 해소 요구

- 점자 보도블록 위 무분별하게 주차된 따릉이 자전거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 요청
- ➔ 시각장애인의 보행권 침해뿐만 아니라 통행 시 사고 발생 위험성도 상존하므로 따릉이 이용자 및 시민들에게 본 문제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담당 부서인 보행자전거과에 점자블록 침범 주차에 관한 주의사항을 따릉이 앱 알림 표출 내용에 반영할 것을 ‘권고’ 함

④ 신기술 특허협약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시정

-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공사 신기술 특허 협약과 관련하여 선정된 공법 및 협약업체에 대해 정보공개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부서에서 비공개 처리하고 있어 시정 요청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2023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업체명, 공법 등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공개되어야 할 사항으로 해당 부서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 공개 할 것을 ‘권고’ 함

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조사

- 전기차 충전구역 내 내연차량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 제기
- ➔ 과태료 고지서 통보 과정에서 위반장소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신고서에 있는 장소를 그대로 이기하여 통보한 것은 행정 절차상 하자로 판단되어 기 통보된 과태료 부과건을 취소하고 위반장소를 확인하여 적법하게 과태료 부과 등을 처리할 것을 해당 구청에 ‘권고’ 함

주요 민원처리 사례

⑥ 명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등록면허세 부과하도록 시정

- 운영하던 학원을 몇 년전 다른 자치구로 이전하였음에도 종전 자치구에서 유관기관에 과세자료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독촉장을 고지하여 업무과실을 조사 요청
- ➔ 학원 이전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 자치구에서 등록면허세를 2년간 착오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면허부여기관에 매년 과세 관련 전산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문서로 협조 요청하는 등 명확한 근거자료를 확보한 후 이를 기준으로 과세할 것을 ‘권고’ 함

⑦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민원 단속 미실시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일부 자치구에서 동일인이 일일 5건 또는 6건을 초과한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민원응대하고 있어 조사 요청
- ➔ 동일인이 일일 신고자 평균 신고량을 초과한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에 대해서도 현장단속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3개 자치구에서 일부 처리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민원응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민원의 업무처리 방식·절차 및 민원응대 요령에 대해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 함

⑧ 여의도공원 불법주정차 단속의 소극행정 시정

- 여의도공원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로 서울경찰청장이 “공휴일 주차 허용 구간”을 지정하였으나, 해당 구청에서는 공휴일인 일요일만 주차를 허용하고 토요일은 과태료 부과 등의 주차 단속을 실시한 소극 행정에 대한 조사요청 건임

주요 민원처리 사례

- ➔ 시민 휴식 지원을 위해서 공원 주변의 공휴일 주차를 허용한 취지와 토요일, 일요일 모두 노동자가 일하지 않는 우리 문화와 구청의 주차 문화과의 단속 행정의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구청으로 하여금 토요일 주차한 시민들에게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위주의 단속을 하도록 해당 구청에 ‘의견표명’ 함

9 [민원배심]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 취소 요청

- 공영주차장의 정기권 만료 후 시간 주차요금이 적용되어 5일간 주차요금이 460,080원이 부과되었는데, 공단이 시간제 요금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5일이 지난 후에야 알려주어, 주차장법상 명시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당하다며 취소 요청
- ➔ 요금 부과에 위법사항을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시간제 주차요금이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책정되었으며, 또한 유사한 공영주차장 운영 규정에는 존재하는 1일 주차요금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아 과도한 요금이 부과된 점 등 고려하여 부과된 요금의 50% 감액 ‘권고’ 및 ‘1일 주차요금 상한제’ 도입과 ‘월 정기주차 종료 전 안내 고지’ 등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 하고 이에 따른 조례 개정 등을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 함

2-2 현장민원 선제적 대응 위한 「내 지역 지킴이」 활성화 추진

「내지역 지킴이」 운영 활성화를 통해 내실 있는 현장 민원 추진으로 시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현장민원 개요

○ 추진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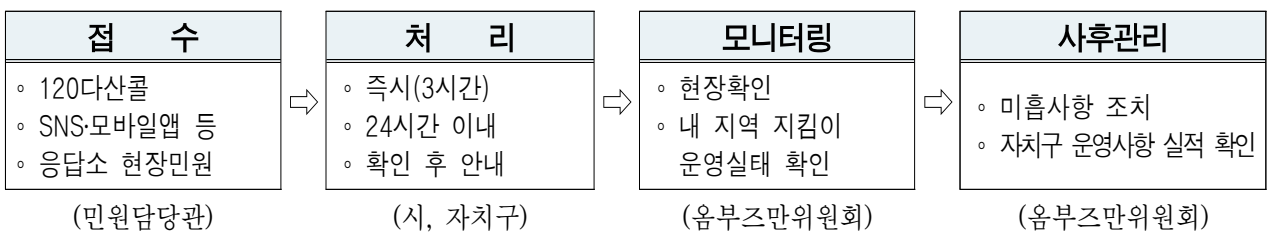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제26조

-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제9조

○ 현장민원 :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신고사항

○ 대 상 : 시민 불편민원 12개 분야 65개 항목(*평가는 6개 분야 10개 항목)
 - 불법주정차, 도로시설물파손, 쓰레기 무단투기, 하수시설, 노상적치물 등

< 현장민원 처리절차 >



□ 추진실적(6월말 기준)

○ 응답소 현장민원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조례 개정, 자치구 현장민원 운영 평가 등을 통해 현장민원 운영 활성화 도모

- ▶ 응답소 현장민원 활성화 계획 수립('23.1.13)
- ▶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실적 평가계획 수립('23.1.13)
- ▶ 현장민원 담당자 간담회 개최('23.4.7)
- ▶ 현장민원 평가 관련 노동조합 1차 간담회 실시('23.4.10)
- ▶ 현장민원 평가 관련 노동조합 2차 간담회 실시('23.6.23)
-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23.7.18)
- ▶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개정(23.7.20)

- 「내 지역 지킴이」 인원 대폭 확대 : '22년 1,407명 → '23년 4,962명
 - 25개 자치구 동별 10명 이상인 4,260명 확충을 목표로 하였으나, 목표를 초과하여 전년 대비 3,555명 증원된 4,962명이 현재 활동 중임

< 자치구별 내지역 지킴이 활동 현황 >

자치구명	인원	자치구명	인원	자치구명	인원	자치구명	인원	자치구명	인원
종로구	196	동대문구	140	노원구	310	강서구	200	관악구	210
중구	184	종랑구	168	은평구	164	구로구	182	서초구	181
용산구	173	성북구	205	서대문구	207	금천구	50	강남구	524
성동구	222	강북구	144	마포구	160	영등포구	181	송파구	270
광진구	150	도봉구	153	양천구	182	동작구	156	강동구	190

※ 내 지역 지킴이: 자치구별 동네의 불편 유발 지역과 취약 요소를 잘 알고 있는 주민으로 구성된 생활불편사항 신고 요원

- 「내 지역 지킴이」 대상 자치구 순회교육 실시: 7개 자치구 878명
 - 현장민원 활성화 취지, 지킴이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위원장 특강
 -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및 현장민원 처리절차 등 실무교육

< 자치구 순회교육 개최 현황 >

구분	계	성동구	용산구	관악구	강동구	금천구	은평구	중구
교육일자	7회	4.25.	4.28.	5.3.	5.4.	5.9.	5.12.	5.17.
참여인원	878명	110명	100명	55명	180명	105명	158명	170명

※ 순회교육 미실시 자치구 : 18개구는 하반기 실시 또는 자체교육 예정

-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실태 점검 강화 : 분기별 1회 → 매월 1회**
 - 점검 강화로 미처리 민원 장기화 사전 예방 및 장기미처리 민원 처리기간 단축
 - ▶ '22년 동기(1~5월) 평균 79일에서 24일로 평균 55일(69.6%)단축

<연도별 응답소 민원처리 현황 >

구분	1~5월 장기미처리 민원 건수	평균 처리소요일 (민원별 처리일수 합/장기미처리 건수)	비고
2022년	133건	79일	'23.6월 미처리건은 처리 중임
2023년	519건	24일	

□ 실태분석 및 평가

- **조례 개정을 통해 응답소 현장민원 평가 및 포상 근거 마련**
 - 2018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민원 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 미비가 지적됨에 따라 2019년도 이후 평가 중단
 - 중단된 현장민원 운영실적 평가 및 포상 재개를 위해 우수 공무원 및 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조례 개정
 - ▶ '23년 7월 추가경정예산 299백만원 편성(포상금 및 내 지역 지킴이 운영 자치구 예산 지원)
- **「내 지역 지킴이」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구축을 위한 기틀 마련**
 - 「내 지역 지킴이」 구성·운영을 통해 선제적으로 현장민원에 대응하고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구축에 기여함
 - 7개 자치구 「내 지역 지킴이」 878명 대상 순회 교육을 통해 내실 있는 「내 지역 지킴이」 운영 도모 및 시민 신고 활동 강화
-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실태 점검 강화로 장기 미처리 민원 신속 해결**
 - 매월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기관별 적정처리

을 및 장기미처리 민원 현황 파악

-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실태 점검을 통해 '23. 5월까지 총 519건의 장기 미처리 민원을 해당 기관에 처리 완료 및 처리결과 회신을 요청하였으며 519건의 장기 미처리 민원 모두 처리 완료함

※ '23. 6월 미처리 민원은 현재 처리기관에 처리 완료 요청 중

- '22. 1~5월 장기미처리 민원 133건이 처리되기까지 평균 79일이 소요됐으나, 분기별에서 월별로 현장민원 처리실태 점검을 강화한 결과 '23. 1~5월 장기미처리 민원 519건은 평균 24일이 소요되었음(평균 처리 소요일 69.6% 단축)

2-3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청원 제도 내실화 추진

- ◆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청원 접수·처리의 효율성 향상
- ◆ 심의회 규정 개정 및 청원 제도 교육을 통한 청원 제도 내실화 추진

□ 청원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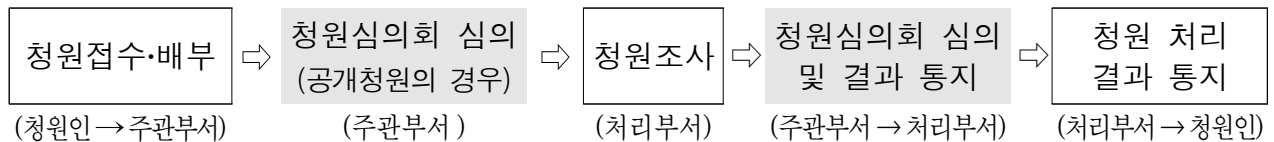
○ 청원의 개념

- 국민이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불만사항을 시정하거나 피해 구제, 법령개정 등을 요청하는 헌법상 기본권

○ 청원의 처리

- 주관부서: 청원의 접수·배부, 심의회 운영 등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처리부서: 소관 청원 분야 관련 조사, 처리결과의 청원인 통보 등

< 청원의 처리절차 >



□ 추진실적 (6월말 기준)

○ 청원 접수·처리

- 총 153건의 청원이 접수되었으며, 83건(54%) 처리, 70건(46%) 이송임

< 2023년 상반기 청원 접수 현황 >

(단위: 건)

합계			1/4분기			2/4분기		
계	처리	이송	소계	처리	이송	소계	처리	이송
153	83	70	61	28	33	92	55	37

※ 접수 및 처리 건수는 서울시 본청, 합의제행정기관에 한함.(서울시 소속기관은 별도 청원기관)

- 접수된 청원에 대하여 25건 처리완료, 41건 처리 중, 3건 처리예외, 14건 취하, 70건 이송 처리함

< 2023년 상반기 청원 처리현황 >

(단위: 건, '23.7.4. 현재 청원처리 기준)

접수	처리완료	처리중	처리에외	취하	이송
153	25	41	3	14	70

※ 처리에외: 비밀, 다른 구제 절차 진행, 허위 사실, 청원내용 불명확 등

○ 청원심의회 개최

- 8회 개최하여 공개여부 11건, 청원처리 9건 등 총 20건 심의

< 청원심의회 심의 현황 >

(단위: 건)

개최 방법			심의 사항			심의 결과		
계	대면	서면	계	공개여부	청원처리	계	가결	부결
8	5	3	20	11	9	20	19	1

○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1.19.)

- 지방자치단체와 별개의 청원기관인 소속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를 개별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개정(법제처 해석사례 반영)

○ 청원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직원 교육 및 홍보

- 청원법·제도 등 청원일반 및 「청원24」 시스템(온라인청원시스템) 교육 (6. 7., 본청 및 소속기관 청원 담당 등 86명 참여)
- 서울시 직원 대상 청원 퀴즈 행사 실시(4 ~ 5월 / 총 772명 참여)

□ 실태분석 및 평가

○ 온라인청원시스템 운영에 따른 청원 접수 건수 증가

- 2022.12.23. 온라인청원시스템(「청원24」)의 운영으로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청원을 신청하게 됨에 따라 접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2023년 2/4분기 접수 청원은 92건으로, 1/4분기 61건에 비해 증가(53.7% ↑)

○ 청원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직원 교육 필요

- 청원제도의 이해력 제고, 업무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직원 교육 필요

○ 청원 처리의 질과 내용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청원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도입된 청원심의회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심의회 심의 생략 시 적정 여부 사전 검토 근거 마련
- 처리부서의 청원답변 통지 내용 점검, 모니터링 후 청원답변 표준안 적용 추진

3

공공사업 감사·평가 활성화로 공정성·투명성 제고

시 역점사업, 시민 파급효과가 큰 사업 등을 중점감시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평가 활동을 통해 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공공사업 활동개요

○ 감사·평가 대상

- 30억원 이상의 공사, 5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 기타 위탁사무, 보조금사업 등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 사업

○ 감사·평가 내용

- 중점(일반)감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등
 관련서류 검토, 현장 확인 등 방법을 통한 감시활동
- 참관 활동: 계약상대자 선정(제안서·기술자평가, 적격자 심의, 작품심사 등)
 과정에 참관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 점검

□ 추진실적 (6월말 기준)

○ 중점감시 활동

- 대상사업 1,657개 사업 중 170개 사업(10.3%)을 중점감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38개 사업에 대한 중점감시 완료

(단위 : 사업 개, %)

구 분	중점감시 추진 현황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대상사업	1,657	174	501	336	411	235
선정사업	170	24	39	13	59	35
(선정비율)	10.3	13.8	7.8	3.9	14.4	14.9
완료사업	38	5	4	2	23	4
(완료율)	22.4	20.8	10.3	15.4	39.0	11.4

- 중점감시 결과 24개 사업 47건의 조치 요구함

(단위 : 사업 개, 조치 건)

연 도	조치요구 사업	조치실적				직권감사
		계	권고	의견표명	현지시정	
2023. 6.	24	47	32	9	6	-
2022. 6	8	13	7	1	5	-
2022.12	71	128	74	29	25	-

○ 참관 활동

- 계약상대자 선정과정에 280회 참관예상 목표 설정하여 193회 참관 완료하고, 권고 1건, 의견표명 3건, 현지시정 13건 등 17건 조치

(단위 : 사업 개, 조치 건)

연 도	예상 참관 횟수	참관실적						조치실적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계	권고	의견 표명	현지 시정
2023.6.	280	193	15	121	34	23	0	17	1	3	13
2022.6	290	112	9	71	12	19	1	7	-	1	6
2022.12	290	278	9	159	43	66	1	39	1	5	33

□ 실태분석 및 평가

○ 공공사업 중점감시 완료 건수 및 처분 건수는 전년도 대비 증가

- 연간목표 170개 사업중 38개 사업(22.4%)을 완료하고, 권고 32건, 의견표명 9건, 현지시정 6건을 조치하였으며, 132개 사업은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감시활동 중에 있음
- 중점감시 완료 건수는 38건으로 전년 동기(32건) 대비 19% 증가하였으며, 이는 조사관이 직접 공공사업 감시활동을 수행한 결과임
- 공공사업 중점감시는 1년 동안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므로 사업 특성상 불가피하게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 분기별 추진목표: 2/4분기까지 20%, 3/4분기 40%, 4/4분기 40% 달성

- 참관활동은 연간 예상목표 280회 중 193회(68.9%) 참관 완료하고, 권고 1건, 의견표명 3건, 현지시정 13건을 조치하였음
-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 해제로 비대면회의에서 대면회의가 증가함에 따라 작년 동기(112회) 대비 참관활동이 대폭 증가함.

주요 공공사업 감시활동 사례

① 협약서에 공유재산법 근거 규정 추가 권고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시설형)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규정을 협약체결시 협약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 돈화문 국악당 운영, 양천·강남·마포 주민편익시설 위탁 운영 위·수탁 협약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누락되어 있어 협약서에 근거 규정을 추가하도록 ‘권고’ 함
- ➔ 협약서에 공유재산법 근거 규정 추가 예정임

② 사무편람 제출 및 승인 이행 권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수탁 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하나,
- 윤극영가옥 운영,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식생활 종합지원센터 운영,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센터 운영, 인재개발원 직장보육시설 운영 수탁기관은 사무편람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시”는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지 않고 승인 또한 하지 않아 제출 및 승인토록 ‘권고’ 함
- ➔ “시” 승인 절차 이행 및 승인 추진 중임

주요 공공사업 감시활동 사례

③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 운영 준수 권고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광역시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공사」의 공사설명서 4. 공사개요 14) 주 계약자 계약에 따른 의무 사항에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를 월 1회 이상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행하고 있지 않아 향후 공사 진행시 “상생협력회의” 운영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함

➔ ‘권고’ 사항 반영예정임

④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권고

- 「양천 주민편익시설 사무편람」에 따르면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수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월간점검(월간종합 점검계획 수립), 정기점검(년 1회 종합점검 계획수립)을 수립하기로 하였으나, 2023년 5월까지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권고’ 함

➔ ‘권고’ 사항 반영예정임

⑤ 공사재개 전 가시설 안전성 확인 등 안전점검 실시 의견표명

- 사천빛물펌프장 설치공사의 토공사 현장의 경우 '22.10월 토목터파기 및 흙막이 가시설 버팀보(7단) 완료 후 상부 공동주택의 설계변경을 위하여 '23.4월 이후 공사중지 상태이며, 설계변경 완료 후 '23년 말~'24년 초 공사 재개가 예상됨
- 장기간 공사 중지가 예상되는 바 가시설 부재 변형에 대한 지속적인 계측관리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어 공사재개 전 가시설 안전성 확인 등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 함

➔ 안전점검 실시에 대한 ‘의견표명’에 대하여 검토 중임

⑥ 강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절차 준수 권고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관악복합평생학습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각종 프로그램 강사와 계약하여 강사료 지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 동의절차를 준수하도록 '권고'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징구 예정임

⑦ 노동자의 정규직 비율에 관한 협약사항 이행 권고

- 서울특별시 힐링센터 쉼표 사무 위·수탁 협약서에 따르면 수탁사무 관련 노동자의 정규직 비율을 2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전체가 비정규직으로 정규직 비율이 0%로 위탁사업에 대한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25%이상)에 관한 협약사항을 이행토록 '권고' 함

➔ 재계약 추진시 반영 예정임(2024.4.1.)

⑧ 사업(운영)계획서 승인 이행 권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 및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위탁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인재개발원 직장보육시설 운영 위탁기관은 사업(운영)계획서를 미승인하여 제출받아 승인토록 '권고' 함

➔ 사업(운영)계획서 승인완료함

4

시민을 위한 일 잘하는 위원회 운영으로 시정 만족도 제고

감사조사과정에 분야별 전문가 참여 확대로 감사조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향상하고, 적극적 위원회 홍보활동으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및 시정 만족도 제고

□ 위원회 활동에 분야별 전문가 참여 확대로 전문성 및 신뢰도 향상

- 「법률자문단」 운영으로 감사·고충민원조사 결과 신뢰도 제고
 - 법률전문가 46명으로 운영, 민원배심 적용범위에 관한 간담회 추진('23.7.5.)
 - 주민·시민 감사 및 고충민원 조사과정에서 수시 자문실시('23.6월말 현재 47건)
- 시민참여옴부즈만 운영 확대로 시민의 시정참여 활동 기회 확대
 - 위원회 조례개정('23.12.30.)을 통해 35명에서 100명으로 확대(위촉식: '23.2.15.)
 -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평가 활동을 통해 시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민원배심 신뢰성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배심원 후보단 전면 확대 추진
 - 복잡·다양한 고충민원 대응을 위한 공모 등을 통해 68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 민원배심 안전 발걸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충민원 해소 도모

□ 위원회 홍보활동 강화로 시민 인지도 및 위상 제고

- 다양한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시민 생활밀착형 홍보 추진
 - 온라인 언론 매체 광고 및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
 - 언론매체(기고, 보도자료, 카드뉴스)를 활용한 홍보 및 퀴즈 이벤트 추진
 - 市 보유 전광판 110개, 세종문화회관 전광판에 홍보영상 표출

-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발간 등을 통한 위원회 홍보 제고
 - 연간 위원회 운영 및 현황, 활동성과, 감사사례 등 대외용 연차보고서 발간
- 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시민 접근성 향상
 - 위원회 제도안내, 언론보도, 활동성과 공유 등으로 인지도 및 접근성 강화
- 국내·외 옴부즈만 협의체와의 교류를 통한 위원회 위상 강화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홈페이지에 위원회 연차보고서 및 뉴스레터 게시

IV. 향후계획

① 시민·주민·직권감사 활성화 및 내실화로 시민 권익보호 강화

- 온라인 감사청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통한 감사청구 활성화
 - '21년 시민감사에 이어 주민감사에도 온라인청구시스템 본격 운영(7. 1.~)
 - 시민감사 대표자 자격검증 및 간편인증 서명처리 시스템 운영
- 법률자문단 등을 활용한 감사의 전문성 및 신뢰도 제고
 - 감사과정에 전문가 참여, 법률 자문 활성화로 감사결과 신뢰도 제고
- 감사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수용성 제고
 - 최소 3회 이상 감사청구인 의견 청취 절차 이행으로 감사결과 만족도 제고

② 선택과 집중 통한 고충민원 조사·처리로 시민만족도 제고

- 고충민원 처리의 내실화로 시민 권익 보호 강화
 - 직접조사보고서 작성 확대, 법률자문 등 제도개선 및 시민 권익 보호
- 직권감사 및 민원배심 등 활용, 민원처리 충실도 및 만족도 제고
 - 고충민원 조사 시 위법부당하고 시민권익침해가 중한 경우 직권감사 전환
 - 민원배심제를 통한 조정·중재 등으로 고충민원의 실질적인 해결 추구

③ 현장민원 순회교육과 평가를 통한 제도 활성화 추진

- 하반기 자치구 「내 지역 지킴이」 순회 교육 확대로 현장민원 내실화 도모
 - 내지역 지킴이 역할에 대한 처리 절차 및 주요 사례 교육을 통한 내지역 안전 강화

- 시민과 긴밀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으로 시민불편사항의 신속·정확한 처리

○ **응답소 현장민원 평가 및 포상 제도 마련으로 사업 활성화 추진**

- 자치구 평가와 우수기관공무원·시민 포상 및 지속적인 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검

④ 청원심의회 심의 강화 및 청원 처리의 질 향상 도모

○ **청원심의회 심의 강화 안내 및 운영 효율성 도모**

- 청원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청원심의회를 거치도록 처리부서에 지속 안내

내

- 청원심의회를 생략하려는 경우 사전 협의하여 청원심의회 운영 효율성 도

모

○ **청원 처리 기한 및 청원 통지 내용 점검, 답변 표준안 추진**

- 청원 처리기한 도래 전 처리기한, 심의요청 방법 등을 재안내 및 점검

검

- 청원답변 점검 및 청원답변 표준안 적용으로 청원 처리의 효율성 제

고

⑤ 공공사업 감시·평가 중점감시 등 활동 강화

○ **사전예방 중심의 효율적인 감시활동 전개**

- 사업의 진척단계를 감안한 문제발생 사전예방 중심의 감시활동

○ **감시활동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로 신뢰도 및 수용성 제고**

-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전문가 참여 확대 및 중대사항 직권감사 전환 실시

○ **감시활동 사례 전파 및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 직무역량 강화**

- 주요 지적사항 유관기관 전파,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 워크숍 등 개최

⑥

위원회 홍보활동 강화로 시민 인지도 및 위상 제고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 및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 추진
 - 대중교통(지하철), 전광판 등 활용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한 홍보
- 외부 기관과의 소통·교류를 통한 위원회 위상 제고 및 활성화
 -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 개최 및 업무협약 등(8월~)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 지역회의 참석, 서울시 사례발표(7.9.~7.13.)

시민감사옴부즈만 현황

('23. 6. 30. 기준)

직 위	성 명	임 기	주요경력	비고
위원장	 주용학	'22.05.26. ~'25.05.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 전)(사)한국지방자치학회 감사 · 전)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감사 · 전)(사)한국지방자치연구원 감사 	
위원	 김정아	'21.02.01 ~ '24.0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성북구 감사담당관 인권센터장 · 전)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 사무처장 · 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위원	 박준우	'21.02.01 .~ '24.0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석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 전)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 전)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실장 	
위원	 채수호	'22.09.13 ~ '25.0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한국부동산원 종합직 5급 · 전)한국국제협력단 대리 · 전)젠 건축사사무소 실장, 건축사 	
위원	 이동은	'23.01.20 ~ '26.0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대한법률구조공단 심사관 · 전)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5급 · 전)국민권익위원회 전문검토위원 	
위원	 소심향	'23.3.16~ '26.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한국여성인권진흥원 비상임이사 · 전)은평구의회 부의장 · 전)국회의원실 5급 비서관 	

감사청구심의회 현황

직 위	성 명	위촉기간	주요경력	비고
위원장	 배 인 구	'22.04.11.~ '24.4.10	·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 서울고등법원 판사	(연임)
위원	 최 기 정	'22.05.18.~ '24.05.17	· SK주식회사 상임고문 · 감사원 감사연구원장 ·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	(연임)
위원	 박 재 영	'21.05.20. ~ '23.05.19.	· 법무법인 율성 변호사 · 사법연수원 제27기 · 서울중앙지법 판사	(신규)
위원	 윤 상 현	'21.09.25. ~ '23.09.24.	· (주)부영주택 과장 · 서울시 공익감사단 ·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위원	(신규)
위원	 양 지 인	'22.04.11.~ '24.04.10.	· 법무법인(유)랜드마크 변호사 · 강남경찰서경미범죄 심사자문위원 · 現한국레슬링협회 인사위원회 위원	(신규)
위원	 양 나 래	'22.04.11.~ '24.04.10.	· 법무법인 라온 변호사 · 성북구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 고등법원 소송구조지정 변호사	(신규)
위원	 이 혜 련	'22.05.18.~ '24.05.17.	· 하늘회계법인 이사 ·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사무관, 감사 및 방송정책 담당 등(2008~2021) · KDI국제정책대학원, 정책학 석사(2017)	(신규)

직 위	성 명	위촉기간	주요경력	비고
위 원 (시의원)		'22.09.13.~ '24.09.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학위과정 수료) · (전)대한민국 국회 인턴 · (전)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주임연구원 	(신규)
	구 미 경			
위 원 (시의원)		'22.09.13.~ '24.0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석사) · (전)국회의원 박용진 의원실 비서관 · (전)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신규)
	박 수 빈			
위 원 (내부)		'21.08.09. ~재임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장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 기후환경본부 대기기획관 	
	이 해 우			
위 원 (내부)		'22.05.26. ~재임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 (사)한국지방자치학회(감사)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감사) · (사)한국지방자치연구원(감사) 	
	주 용 학			

청원심의회 현황

직 위	성 명	위촉기간	학력 및 주요경력	비고
위원장 (내부)		'22.05.26.~ '25.05.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 전)(사)한국지방자치학회 감사 · 전)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감사 · 전)(사)한국지방자치연구원 감사 	
	주 용 학			
위 원		'22.11.01.~ '24.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대학교대학원 행정학(박사) · 한양여자대학교 행정실무과 조교수 · 서울시 독립연구자협동조합 이사 	
	김 민 곤			
위 원		'22.11.01.~ '24.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석사) ·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 · 전)법무법인 시공 소속변호사 · 전)법무법인 한일 변호사 	
	박 정 민			
위 원		'22.11.01.~ '24.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석사) ·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 전)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전)법무법인 평안 소속변호사 	
	이 승 은			
위 원		'22.11.01.~ '24.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광대학교대학원 행정학(박사) · 한국골프대학교 총장 · 전)한국폴리텍대학 학장 · 전)대통령직속 노사정위원회 위원 	
	이 현 수			
위 원 (내부)		'21.02.01.~ '24.0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성북구 감사담당관 인권센터장 · 전)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 사무처장 · 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김 정 아			
위 원 (내부)		'21.02.01.~ '24.0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석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 전)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 전)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실장 	
	박 준 우			

위원회 소속 외부전문가 현황

1

법률 자문단

2

시민참여옴부즈만

3

민원배심제 배심원후보단
